



LAW Common Sense Information

채권자가 임차인의 동거인을 채무자로하고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기압류를 하여온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.



글 / 박종복 변호사

QUESTION

본인 소유 주택중 방 1칸
을 A에게 임대보증금
1,500만원에 임대주었
다. A는 아들인 B와 함께 입주하
여 살고 있다. 그런데 C은행이 B
를 채무자, 본인을 제3채무자로
하여 채권기압류를 하여왔다. 본
인이 C은행에 임대보증금을 내어
주어야 하는가?

먼

저 구하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B와 계약
을 체결한 것이 아닌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. 따라서
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
계약상대방인 A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방이 아
닌 B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.

한편 C은행이 법원에 기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
자인 구하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문에 채무자가 A
가 아닌 B로 표시되어 있는 한 구하는 C은행에 임대보증금을 반
환하여줄 법적의무는 없다. 왜냐하면 구하는 B에 대하여는 아무
런 계약관계가 없고 따라서 B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가 없으
므로 구하로서는 B의 채권자가 한 채권기압류에 응할 법적의무
가 없기 때문이다.

만약 구하가 C은행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준 경우에 A가 다
시 구하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 온다면 구하는 A의 청구를
거절할 수 없고 따라서 A에게 다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
할 위험에 빠진다.

결국 구하는 B가 A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을 양도 받았다
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C은행에 임대보증금을 내어 주어
서는 아니되는 것이다.